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기준

2016.09.3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투자대상 자산) 이 기준은 회사 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직원에게 적용하며, 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서에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 단, 투자신탁자산별로 각각의 계좌를 두고 계좌별로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등)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투자신탁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운용담당자"라 함은 실제펀드를 운용하는 직원 말한다.
- ③ "매매담당자"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5조(개정 등) 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2 장 사전자산배분

제6조(자산배분 원칙) 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하며, 투자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체매매 등 결제자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펀드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③ 공모주, 회사채 등의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청약일에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을 기재한 사전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첨부 3의 사전자산배분 정정승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운용담당자의 동의와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매매결과를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규, 집합투자규약, 운용지침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운용제한 사항의 위반방지를 위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
2.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
3. 결제자금 부족, 환매자금 부족 등 이 항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으로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⑤ 제①항 및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펀드별 매매계좌를 분리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펀드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펀드별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매담당자는 각 운용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매매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⑤ 운용담당자는 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체결된 자산배분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①항 및 제⑤항에도 불구하고 펀드별로 매매계좌를 분리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기록·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집행

제8조(매매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펀드별로 종목, 주문금액 또는 수량, 가격,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주문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 증권업협회 채권종류별,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펀드별로 매매계좌를 분리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매매주문의 집행)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산배분 및 자산배분내역서 작성

제10조(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첨부 2의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펀드별로 매매계좌를 분리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

제11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 제2조에 정하는 자산에 대해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실행하는 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에서 정하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 예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시)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